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44호 2019. 6. 10(월)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1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6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규칙은”을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7항”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2항”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5조제2항”으로,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이”를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 기

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

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

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제4항 중 “이와”를 “이하”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품 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를 “수립하고”로, “교육을”을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4호 서식]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0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7-5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6.1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6-1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8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7-5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59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28 (석남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803 (공촌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맹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lt;경명&gt;명칭에서 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5-2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08-1 (불로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8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25-15 (석남동)	20090922	서구 4대 제래시장의 하나인 거북시장 및 거북골을 관통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68-11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시내를 이르는 말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5-1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13 (왕길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2-4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995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9.06.07. ~ 2019.06.21.(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0주2764외 15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10주2764	이학*	2019.05.30	
2	23고1352	허*	2019.05.23	
3	50로3197	최민*	2019.05.23	
4	01다3626	남범*(티와이모터스)상품용	2019.05.22	
5	충남85가8343	이미*	2019.05.21	
6	37수9023	강문*	2019.05.20	
7	69두2185	정상*	2019.05.20	
8	60노4746	이지*	2019.05.20	
9	64조7585	최미*	2019.05.17	
10	48라9985	최민*	2019.05.17	
11	01서3418	김현*	2019.05.14	
12	19나5383	김봉*	2019.05.09	
13	17라9944	김상*	2019.05.08	
14	37부1556	송민*	2019.05.02	
15	58조0183	김대*	2019.05.01	
16	48조2129	김경*	2019.05.01	